

대학안전관리계획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2024. 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12
2. 안전사고	13
① 대학 안전사고	13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4
③ 연구실사고	16
3. 감염병 확산	18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8
4. 범죄	23
① 일반범죄	23
② 성범죄	2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9
① 산업재해	29
② 중대재해	32
6. 기타	34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34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36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39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7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1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52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54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55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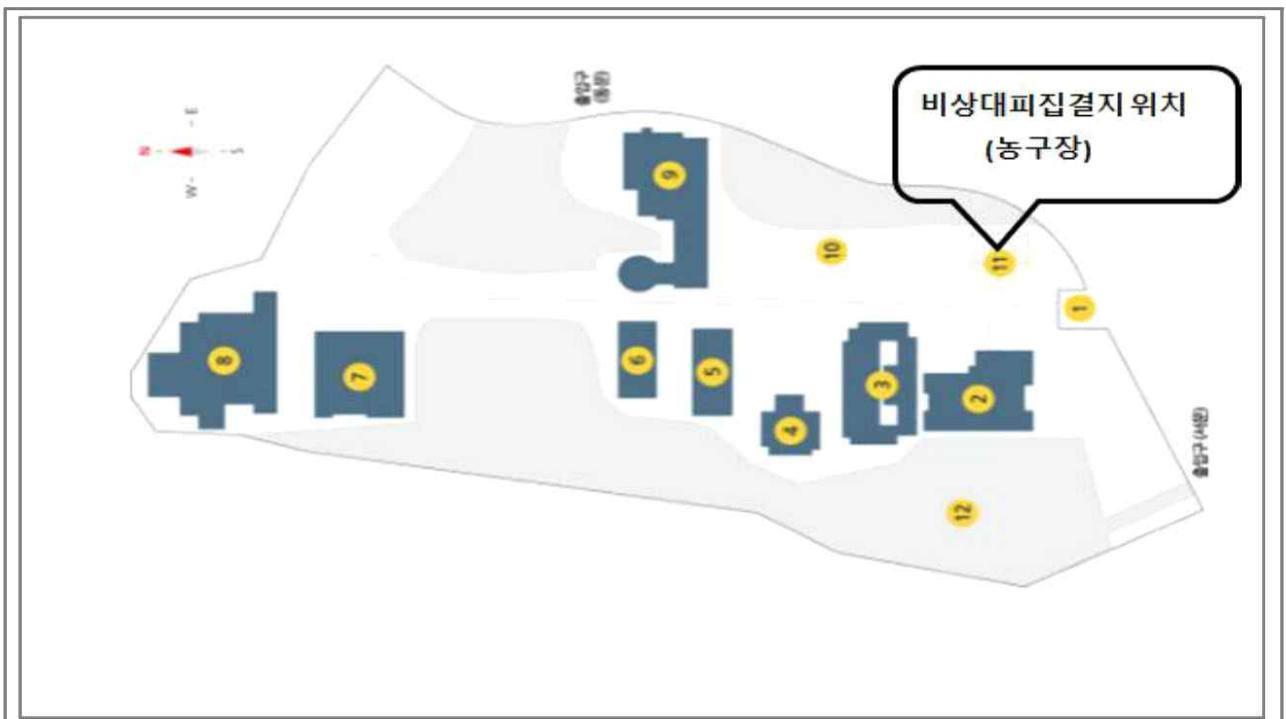
학교명	차의과학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 화	031-850-8934	FAX	031-543-9914 홈페이지 www.cha.ac.kr
총장	김 동 익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정 우 식(직책:총무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2,637	755	412	3,804	휴학포함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123	479	30	-		263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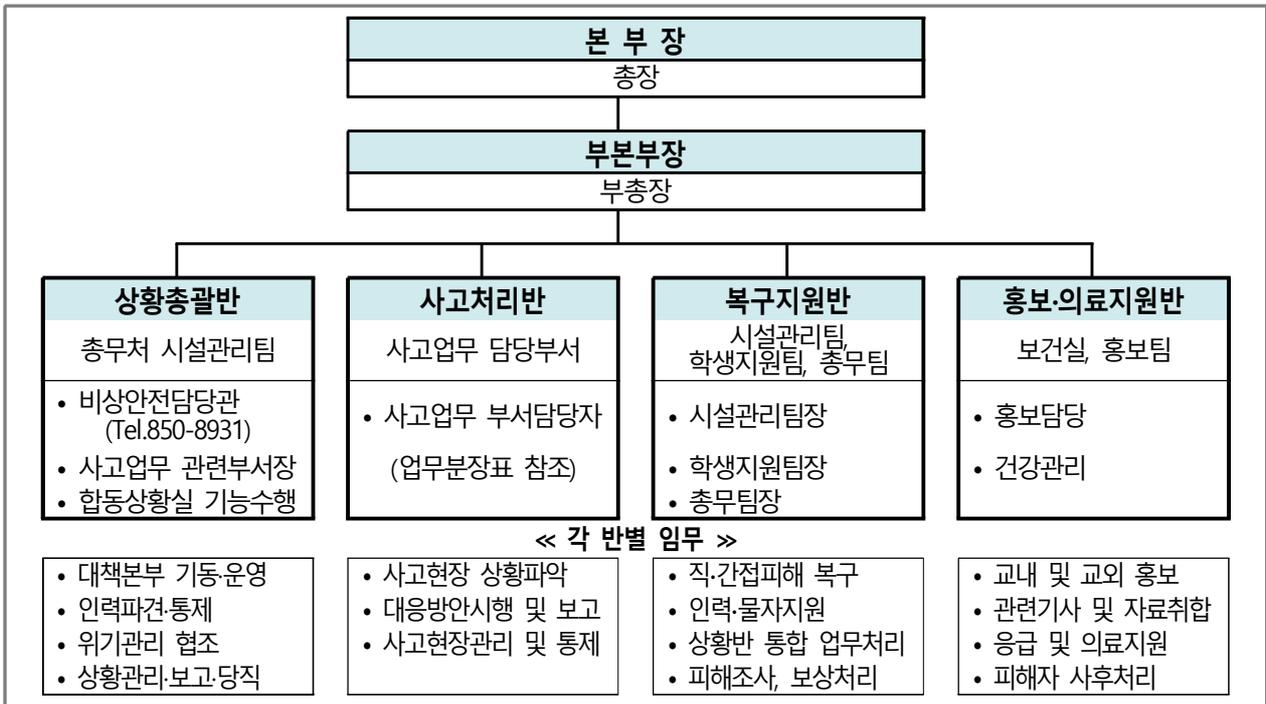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사회재난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관계부서
	연구실 사고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교육시설안전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실	관계부서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관계부서
	일반범죄	인권센터	관계부서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중대재해처벌법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6. 기타	비상사태	총무처 시설관리팀	관계부서

□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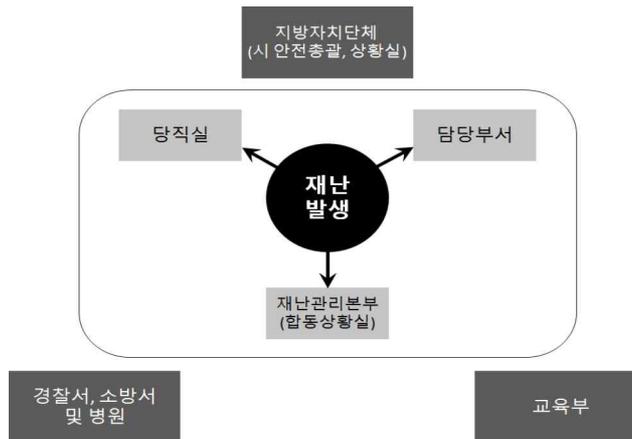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총장실	총장	김○익	031-850-9055
부총장실	부총장	임○욱	031-850-9070
교무처	처장	윤 ○	031-850-8977
학생처	처장	이○기	031-850-8960
기획처	처장	강○곤	031-850-8915
총무처	처장	정○식	031-850-8901
입학홍보처	처장	윤○혜	031-850-9020
총무처 시설관리팀	팀장	조○양	031-850-8931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재난안전관리체계



비상연락망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방수공사	51	99	19	169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계	51	99	19	169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재난보험	6	7	7	20	
계					

2.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cha.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보건실	사원	안○윤	031-850-8925 ahncy2@cha.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4	2	1	1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4	2	1	1	0
	계	4	2	1	1	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대학종합보험	11	12	12	35	
승강기사고배상보험	0.2	0.2	0.2	0.6	
계	11.2	12.2	12.2	35.6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cha.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교내 절기별 안전점검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사원	김O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cha.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O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2	1	1	1	2	
재산피해(백만원)	0.16	0.34	0	0	0	
인명 피해	사망(실종)					
	부상	2	1	1	1	2
	계	2	1	1	1	2

□ 원인분석

-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안전수칙 미준수
- 고압증기 멸균기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 미착용
- 고압증기멸균기 사용매뉴얼 미준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 책임자 예방대책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고압증기멸균기 작업단계별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 실시
 - 고압증기 멸균기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 연구활동종사자 예방대책
 - 고압증기멸균기 취급 시 안전보호구 착용 및 작업단계별 주의사항 숙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고압증기멸균기 취급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 및 숙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건강검진	16	80	80	176	
정밀안전진단	7	7	7	21	
상해보험	14	15	15	44	
산재보험	1.3	0	0	1.3	
계	38.3	102	102	242.3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실장	보건실	실장	박O아	031-850-8907 japark@cha.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실	사원	안O윤	031-850-8925 ahncy2@chamc.co.kr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총무팀	주임	마O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처 교무팀	과장	안O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처 교무팀	사원	홍O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O솔	031-850-8926 jinsoril10@cha.ac.kr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감염자 수	0	0	9	561	32	120.40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COVID-19 감염병 예방	18.5	15	0	33.5	

4. 범죄

1]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O기	031-850-8960, sklee@cha.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부센터장	정O현	031-850-9017, eduforest@cha.ac.kr	
팀원	인권센터	대리	장O량	031-850-9077, jang37@cha.ac.kr	
팀원	인권센터	사원	유O석	031-850-9013, silverstone@cha.ac.kr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총무팀	주임	마O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처 교무팀	과장	안O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처 교무팀	사원	홍O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O솔	031-850-8926 jinsoril10@cha.ac.kr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 시 생활관, 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출입통제시스템 운영비	18	18	18	54	
계	18	18	18	54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기	031-850-8960, sklee@cha.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부센터장	정○현	031-850-9017, eduforest@cha.ac.kr	
팀원	인권센터	대리	장○량	031-850-9077, jang37@cha.ac.kr	
팀원	인권센터	사원	유○석	031-850-9013, silverstone@cha.ac.kr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총무팀	주임	마○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처 교무팀	과장	안○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처 교무팀	사원	홍○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l10@cha.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0	1	1
	성폭력	0	0	0	0
	계	1	0	1	1
피해자 수	성희롱	1	0	4	1.6
	성폭력	0	0	0	0
	계	1	0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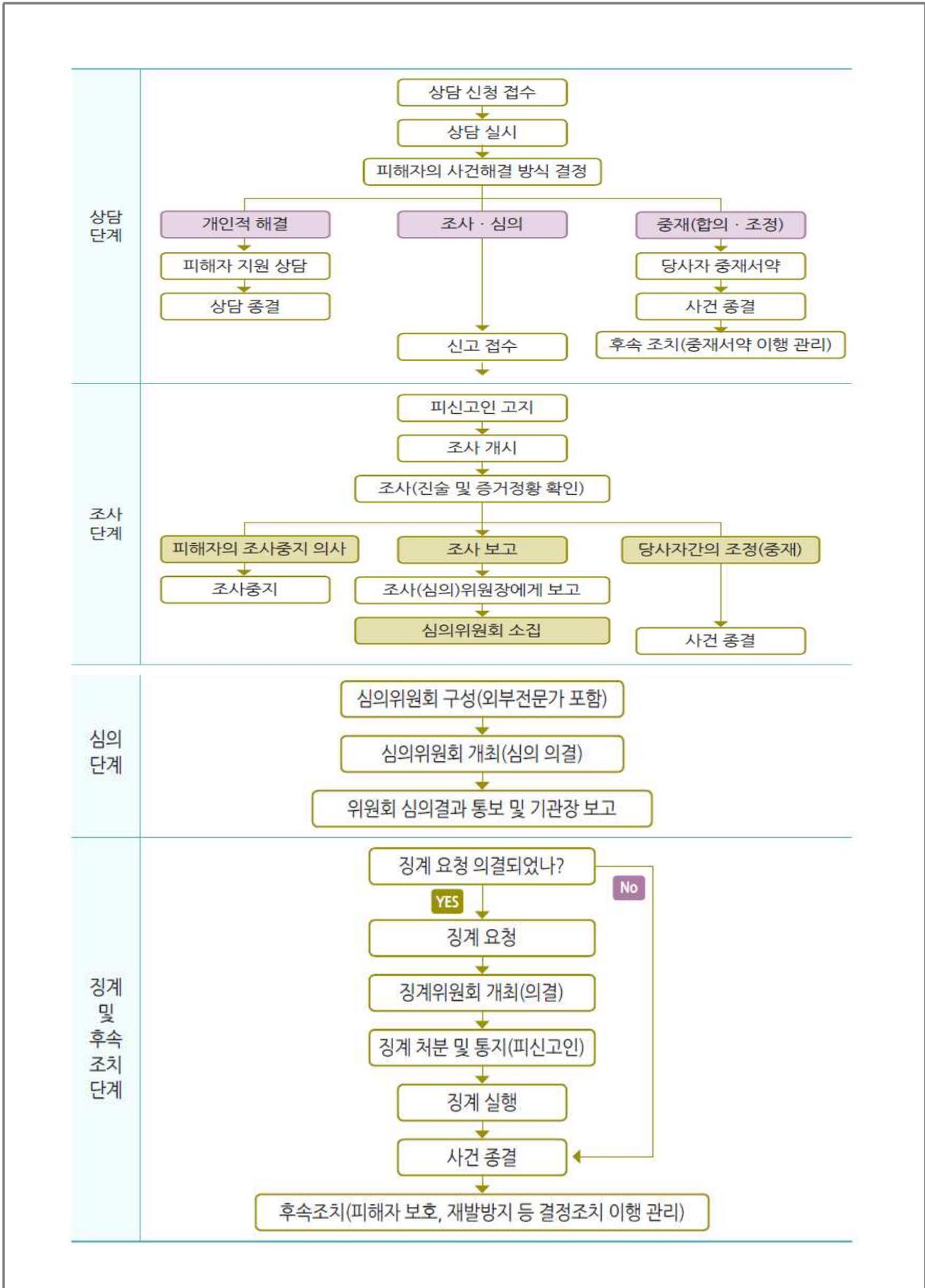
□ 원인분석

- 교내 성희롱 사건으로 학교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중
- 교내 성희롱 사건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인식 제고에 대한 방안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사건 개요

발생일		사건접수일 (인지사점)		사건 유형	
사건 발생기관명	차의과학대학교		기관유형	대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사건개요	-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교비 사업	폭력예방교육비	900,000	500,000	800,000	2,200,000	
	교육 및 협회비	270,000	1,647,300	1,500,000	3,417,300	
	기타사업운영경비	1,160,000	1,075,900	1,500,000	3,735,900	
대학 혁신 사업)	장학금	-	900,000	900,000	1,800,000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000,000	1,726,060	1,500,000	8,226,060	
	기타사업운영경비	1,980,000	160,800	400,000	2,540,800	
	인쇄출판비	-	870,000	1,000,000	1,870,000	
계		9,310,000	6,880,060	7,900,000	23,790,06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사원	김O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장	교무처 교무팀	과장	안O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총무처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장	생활관	과장	김O민	031-850-9466 rokmc175@cha.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 세부적인 기본계획 및 추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 ※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예방 등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유해·위험 방지 활동(위험성 평가 및 유해요인 조사)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사고 확인 및 조치
- 사고보고 및 관계기관에 지원요청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조사팀 구성 및 운영
- 사고 검토 및 종결,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안전조치〉

-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보건조치〉

- 분진·흡·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예산반영 예정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 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사원	김○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장	교무처 교무팀	과장	안○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협 조부서
팀장	총무처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총무처 총무팀	과장	이○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장	생활관	과장	김○민	031-850-9466 rokmc175@cha.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기본기획) 설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 및 개선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권한 부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 및 점검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 및 업무 추진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조사팀 구성 및 운영
- 사고 검토 및 종결,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체계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환경조성〉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계획중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과장	이○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직장예비군중대	중대장	이○기	031)850-9347, ljk8780@cha.ac.kr	협조부서
팀원	직장예비군중대	계장	정○찬	031)850-9348, ravelin@cha.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계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종합보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DB손해보험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대학종합보험	2023-02-21 2024-02-21	3	3,543	14,288					신입생 담보
2023	영업배상책임 보험 플러스 교육기관보험	2023-03-01 2024-02-28	3	3,543	11,944	-	-	-	-	신입생 담보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사망,후유장해	100,000	100,00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사망,후유장해	100,000	10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한국교육시설 안전원(공제)	2023-01-01 2024-12-31	6,395	42,631	6,877					
2024	한국교육시설 안전원(공제)	2024-01-01 2025-12-31	6,395	42,631	6,77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1,000,000	2,000,000	
대물		2,000,000	
이하여백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연구실안전 공제(보험)	2023-02-21 2024-05-20	-	2,726	25,641	-	-	-	-	금수에 따라 단가 다름
2024	연구실안전 공제(보험)	2024-05-21 2025-02-20	-	2,632	25,000					금수에 따라 단가 다름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보상
요양급여	2,000,000		
장의비	10,000		
입원급여			1일당 5만원 보상, 3일초과 30일 이내 한도내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중증화상 1천만원/중등도화상 4백만원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생활관	과장	김O민	031-850-9466 rokmc175@cha.ac.kr	협조부서
팀원	생활관	사원	강O호	031-850-9437 wildfash@cha.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3월, 9월	매회 1시간	재학생	
교직원	12월	1시간	전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3월, 9월	매회 1시간	재학생	
교직원	12월	1시간	전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l10@cha.ac.kr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방법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실장	보건실	실장	박O아	031-850-9081 japark@cha.ac.kr	협조부서
팀원	보건실	사원	안O윤	031-850-8925 ahncy2@chamc.co.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연 1회	2시간	재직중인 직원	예정
협업근로자	분기 1회	6시간	30	예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연구처 연구지원팀	부장	진O환	031-881-7281, jnbhwan@cha.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사원	김O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원	총무처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협조부서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1학기, 수시	2회 이상	150여명	
정기교육훈련	1학기	1회	2700여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1학기, 2학기 수시	2회 이상	400여명	
정기교육훈련	1학기, 2학기	2회	2700여명	
찾아가는 협력교육	연구실안전, LMO	2회	80여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찾아가는 협력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및 LMO 안전교육(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보건실	실장	박O아	031-850-8907 japark@cha.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실	사원	안O윤	031-850-8925 ahncy2@chamc.co.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내공지	수시	전구성원	
감염병 예방 수칙	교내공지	수시	전구성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O기	031-850-8960, sklee@cha.ac.kr	주 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부센터장	정O현	031-850-9017, eduforest@cha.ac.kr	
팀원	인권센터	대리	장O량	031-850-9077, jang37@cha.ac.kr	
팀원	인권센터	사원	유O석	031-850-9013, silverstone@cha.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 3. 2.~2023. 12. 31.	120분	1, 883	
교직원	2023. 5. 1.~2023. 12. 31.	240분	659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고위직 대상 교육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시행 지침에 따른 고위직 별도 교육 진행
폭력 예방 교육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개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교육 각 1시간 이상 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1회	60분	1,802	500,000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1회	60분	1,726	-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1회	60분	517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1회	각 60분	596	5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고위직 대상 교육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진행
폭력 예방 교육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개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교육 각 1시간 이상 교육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처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처	과장	이○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직장예비군중대	중대장	이○기	031)850-9347, ljk8780@cha.ac.kr	협조부서
팀원	직장예비군중대	계장	정○찬	031)850-9348, ravelin@cha.ac.kr	

2023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2024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소방안전본부	031-230-2961		
중앙119구조본부	031-538-5511		
한국전기안전공사	031-850-7000		
한국가스안전공사	031-878-0019		
한국전력공사	123		
의정부 성모병원	1661-7500		
포천 보건소	031-538-2551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031-850-8934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안전본부	031-230-2961		
중앙119구조본부	031-538-5511		
한국전기안전공사	031-850-7000		
한국가스안전공사	031-878-0019		
한국전력공사	123		
의정부 성모병원	1661-7500		
포천 보건소	031-538-2551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031-850-8934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의정부 성모병원	1661-7500		
포천 보건소	031-538-2551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실)	031-850-8925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경찰청	112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	02-586-1295		
해바라기센터	031-215-1117		
포천경 찰서	031-539-8224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인권센터)	031-850-9353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안전본부	031-230-2961		
중앙119구조본부	031-538-5511		
한국전기안전공사	031-850-7000		
한국가스안전공사	031-878-0019		
한국전력공사	123		
의정부 성모병원	1661-7500		
포천 보건소	031-538-2551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총무처)	031-850-8934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국방부	1577-9090		
포천시청	031-538-2114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차의과학대학교 (직장예비군중대)	031-850-9347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과장	이○훈	031-850-9046 jhlee@cha.ac.kr			
	② 사회재난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과장	이○훈	031-850-9046 jhlee@cha.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cha.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보건실	사원	안○윤	031-850-8925 ahncy2@cha.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cha.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③ 연구실사고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지원팀	사원	김○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실장	보건실	실장	박○아	031-850-8907 japark@cha.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실	사원	안○윤	031-850-8925 ahncy2@chamc.co.kr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주임	마○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팀	과장	안○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팀	사원	홍○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원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기	031-850-8960, sklee@cha.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부센터장	정○현	031-850-9017, eduforest@cha.ac.kr	
팀원	인권센터			대리	장○량	031-850-9077, jang37@cha.ac.kr			
팀원	인권센터			사원	유○석	031-850-9013, silverstone@cha.ac.kr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주임	마○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팀			과장	안○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팀			사원	홍○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② 성범죄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4. 범죄	② 성범죄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기	031-850-8960, sklee@cha.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부센터장	정○현	031-850-9017, eduforest@cha.ac.kr			
		팀원	인권센터	대리	장○량	031-850-9077, jang37@cha.ac.kr			
		팀원	인권센터	사원	유○석	031-850-9013, silverstone@cha.ac.kr			
		팀장	총무팀	차장	서○주	031-850-8934 wj21seo@cha.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주임	마○주	031-850-9057 ejoo9611@cha.ac.kr			
		팀장	교무팀	과장	안○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팀원	교무팀	사원	홍○영	031-850-9045 youngji@cha.ac.kr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사원	이○솔	031-850-8926 jinsori10@cha.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지원팀	사원	김O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장	교무팀	과장	안O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장	생활관	과장	김O민	031-850-9466 rokmc175@cha.ac.kr	
	② 중대 재해	팀장	시설관리팀	차장	조O양	031-850-8931 ss2772@cha.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과장	강O일	031-850-8934 taeil0819@cha.ac.kr	
		팀원	연구지원팀	사원	김O현	031-881-7087 kdh0585@cha.ac.kr	
		팀장	교무팀	과장	안O미	031-850-8981 ahnjm2000@cha.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팀원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학생지원팀	과장	안O수	031-850-8912 la1209@cha.ac.kr		
팀장		생활관	과장	김O민	031-850-9466 rokmc175@cha.ac.kr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총무팀	차장	서O주	031)850-8907, wj21seo@cha.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과장	이O훈	031)850-9046, jhlee@cha.ac.kr	
		팀장	직장예비군중대	중대장	이O기	031)850-9347, ljk8780@cha.ac.kr	협조부서
		팀원	직장예비군중대	계장	정O찬	031)850-9348, ravelin@cha.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9	2020	20121	2022	2023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4	2	1	1	0	1.6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4	2	1	1	0	1.60
			계	4	2	1	1	0	1.6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2	1	1	1	2	1.40	
		재산피해(백만원)	0.16	0.34	0	0	0	0.1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0
			부상	2	1	1	1	2	1.40
			계	2	1	1	1	2	1.40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0	0	9	561	32	120.40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② 성범죄	발생건 수	0	1	1	0	1	0.60	
		피해자 수	0	1	1	0	4	1.2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방수공사 건물 및 시설	51	99	19	169	
	② 사회재난 재난보험	6	7	7	20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대학종합보험	11	12	12	35	
	승강기사고배상보험	0.2	0.2	0.2	0.6	
	② 교육 시설 안전사고					
	③ 연구실 사고 건강검진	16	80	80	176	
		정밀안전진단	7	7	7	21
상해보험	14	15	15	44		
산재보험	1.3	0	0	1.3		
3. 감염병 확산	① COVID-19 감염병 예방 코로나-19	18.5	15	0	51.4	
4. 범죄	① 일반범죄 무인경비 시스템	18	18	18	54	
	② 성범죄 성 인권 예산	9	7	8	2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② 중대재해					
6. 기타	① 비상사태					